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31.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7. 8. 31.

다. 상정일자 : 2007. 9. 7.(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금고 지정 방법 ⇒ 경쟁방법
- 수의계약 단서 조항 규정 (제1항 1~3호)
- 단일금고 지정 원칙, 특별회계 및 기금 별도 금고 지정(제2항)
- 금고 약정기간 지정 ⇒ 3년(제3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
-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 임기, 기능, 위원의 임무, 회의 등

○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금고약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 2007. 8. 3 ~ 8. 24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개 금융기관(신한은행 제천지점,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의견을 반영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의견 및 조치결과를 기초로 하여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 제 3조 금고지정에 관한 내용 중 ①항 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를 ⇒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2호에서는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변경하여 조례를 입법예고 후 행자부 예규 제240호에 맞게 단서규정의 각호를 명확히 하도록 접수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 ②항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로 변경한바, 그 사유로는 행자부예규(2007. 6. 1) 제240호에 따라 일반회계는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할 수 있음에
테 본 조례안에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강현삼 의원)

나. 답변요지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 2008. 12. 31일 까지입니다.

○ 요즈음은 금융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가 도금고와
시금고가 다르더라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타은행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
습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수의 방법 선택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즉, 금리 및 지역주민의 이봉
편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시 금고지정 및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우리시 금고 만료기간은 언제입니까?(강현삼 의원)

○ 행정자치 예규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 중의 하나가 상급단체인 광역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방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데 본 조례안에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강현삼 의원)

나. 답변요지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 2008. 12. 31일 까지입니다.
- 요즈음은 금융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가 도금고와 시금고가 다르더라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타은행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